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95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 강훈식 · 이용빈 · 김윤덕

김홍걸 • 이동주 • 최인호

신동근 · 김두관 · 송갑석

기동민 · 이성만 의위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령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등의 법정 준수사항의 미비가 존재하고,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에서야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청구하고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준수사항의 사유에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

에서의 접근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접근금지"를 "2km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 접근금지"로 한다.

2의3.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부착자"를 "피부착자(부착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	제9조의2(준수사항) ①
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	
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3.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에서의 거주 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u>접근</u>	3 <u>2km</u>
<u>금지</u>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리 안에서 접근금지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u>피부착자</u> 가 다음 각 호의	① 피부착자(부착명령을 받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 자를 포함한다)</u>
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	
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	

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	
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